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판사 임용 법조경력요건 완화 등〉

-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864호)
- 장동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112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판사 임용 법조경력요건 완화 등	5
가. 개정안의 내용	5
나.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및 시행 경과	8
다. 법조일원화제도 시행 이후 법관 임용 현황	11
라. 검토의견	13
1) 판사 임용 법조경력요건 완화	13
2) 전담법관 임용제도 법적 근거 마련	17
마. 관계기관 의견	19
2. 재판장 법조경력요건 강화 및 예외규정 마련	20
가. 개정안의 내용	20
나. 검토의견	21
다. 관계기관 의견	23

I. 제안경위

1. 김용민의원안(의안번호 제2864호)

가. 제 안 자 : 김용민의원 등 21인

나. 제 안 일 : 2024. 8. 14.

다. 회 부 일 : 2024. 8. 16.

2. 장동혁의원안(의안번호 제3112호)

가. 제 안 자 : 장동혁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8. 23.

다. 회 부 일 : 2024. 8.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용민의원안(의안번호 제2864호)

현행법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음. 여기에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판사가 사회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음.

이러한 법조일원화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판사의 근무여건 개선, 법조일원화제도에 부합하는 재판제도의 변화, 법조인구의 확대 및 질적 개선 등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전제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조일원화제도의 단점이 크게 부각되어 여러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판사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아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가 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판사들이 고령화되어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여기에 현재 판사의 수뿐만 아니라 판사의 업무를 보조할 재판연구원의 수가 충분하지 않고, 사회발전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량이 증가하여 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강화될 경우 사건처리 지연 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일원화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법조일원화제도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실력을 겸비하고 사회

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들이 조화롭게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으로 판사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를 전담하는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및 제42조의3).

2. 장동혁의원안(의안번호 제3112호)

현행법은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

2011년 개정되어 2013년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위와 같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제도가 도입되었음. 이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법조일원화제도가 도입된 이후 판사의 근무환경 개선, 재판제도 변화, 변호사 수의 획기적 증가 등 법조일원화제도의 전제조건을

갖추기 위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았음. 오히려 판사들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판사직에 지원하려는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우수한 인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등으로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는 법조일원화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판사의 업무량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전통적인 법조일원화 국가에 비해 상당히 많고, 재판연구원 등 재판보조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상향될 경우 판사들의 고령화와 우수한 인재 확보 실패로 사건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재판지연에 따른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져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게 될 것임.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현실적인 여건과 재판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III. 검토의견

1. 판사 임용 법조경력요건 완화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 제42조제2항 본문은 판사 임용자격으로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만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었음. 다만,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3년 이상,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이상,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음.
- 양 개정안은 판사 임용자격으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김용민의원안은 이를 5년으로, 장동혁의원안은 이를 3년으로 낮추고 있음.

한편, 김용민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특정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를 임용하기 위한 절차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법원에서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장기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도입한 전담 법관 임용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현행	김용민의원안	장동혁의원안
조치)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나.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및 시행 경과

- 법조일원화제도는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제도로, 법조에 갓 진입한 젊은 법조인을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하여 법관의 경력을 쌓아가게 하는 제도와 대립되는 개념의 제도임.
- 우리나라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법관으로 임용하였는데,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법관 관료화 문제 등이 지적됨에 따라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제도를 시행¹⁾함.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은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함. 다만, 당시 부칙에 경과규정(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을 두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법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3년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년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7년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였음.

1) 2011. 6. 30. 본회의 의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2490호,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 위원회안 형태로 통과되었으나, 내용은 이주영의원안(1803544), 여상규의원안(1807953)을 바탕으로 함
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3. 1. 1.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조일원화제도 관련 규정 시행

-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도입된 법조경력요건의 단계적 상향조치는 2014년에 한 차례, 2021년에 다시 한 차례 유예된 바 있음.

2014년 법원조직법 개정²⁾의 경우 당초 경과규정이 구조적으로 2015년 이후 법관 인력수급에 차질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음. 당시 경과규정에 따르면, 최소 법조경력 요건은 2013년, 2018년, 2020년, 2022년에 각각 3년, 5년, 7년, 10년으로 상향되는데, 이 경우 2014년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017년에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추어 법관 임용이 가능하나, 2015년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025년이 되어서야 법관 임용이 가능하게 됨³⁾. 이에 최소 법조경력 5년의 이행기는 2021년까지로, 최소 법조경력 7년의 이행기는 2025년까지로 연장되었음.

2021년 법원조직법 개정⁴⁾의 경우 다음연도인 2022년부터 최소 법조경력이 7년으로 상향되면 과거 법조경력요건 상향 이후 법관 임용 부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법관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음. 이에 최소 법조경력 5년의 이행기는 2024년까지로, 최소 법조경력 7년의 이행기는 2028년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2) 법률 제12188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2014. 1. 7. 공포, 2014. 1. 7. 시행)

3)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472호, 홍일표의원 대표발의)」) 및 법률 제12188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참조

4) 법률 제18633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2021. 12. 21. 공포, 2021. 12. 21. 시행)

- 참고로,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의 단계적 상향조치를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⁵⁾을 가결하기 전,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제42조를 개정하여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되,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요건을 가진 사람 중에서 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⁶⁾이 부결되었던 바 있음.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113775호, 법제사법위원장)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112201호, 법제사법위원장)

다. 법조일원화제도 시행 이후 법관 임용 현황

- 현재 법관 임용 절차는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과 ‘전담법관 임용’의 2가지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음.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은 법원조직법상 최소 법조경력(현행 5년) 이상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절차이며, 전담법관 임용은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소액단독, 민사단독 등 특정 재판업무를 전담할 법관을 임용하는 절차임.

2017년까지는 이외에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 절차가 추가로 존재하였으나, 법원조직법상 최소 법조경력이 5년 이상으로 상향된 2018년부터는 해당 임용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

<2018년 이후 법관 임용 절차>

구분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	전담법관 임용
대상	법원조직법상 최소 법조경력 이상	(~2018년) 법조경력 15년 이상 (2019년~) 법조경력 20년 이상
선발목표	배석·단독판사 자원 선발 (최소 4년 배석판사 근무)	소액단독 또는 민사단독 전담 (원숙하고 존경받는 법조인 선발)
주요 심사항목	잠재력·실무능력·인성 평가 종합	인품·자질 평가 중심

자료: 법원행정처,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2022) 발췌

-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법관 임용 현황을 살펴보면, 법원조직법상 최소 법조경력요건이 5년으로 상향된 첫 해로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자 수가 36명에 불과하였던 2018년을

제외하면, 매년 대체로 100여명 정도의 법관이 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법관은 2017년까지는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 절차를 통해, 2018년부터는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 절차를 통해 임용된 것으로 나타나며, 전담법관 임용은 매년 1명 내지 4명 정도로 많지 않은 수준임.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법관 임용 현황>

임용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즉시임용(*)		32	9	-	-	-	-	-	-	-	-	-	-
단기 법조경력자 (**)	사법연수원	57	51	52	74	107	-	-	-	-	-	-	-
	법전원	-	-	37	26	25	-	-	-	-	-	-	-
일반 법조경력자(***)		11	19	18	8	27	36	80	155	156	135	121	111
전담법관		3	3	4	-	2	2	2	3	1	4	2	3
개별임용		-	1	-	1	-	1	1	-	-	-	-	-
합계		103	83	111	109	161	39	83	158	157	139	123	114

(*) 헌법재판소 한정위헌 결정으로 2011. 7. 18. 당시 사법연수생 신분이었던 자 법관임용 지원기회 부여

(**) 2017년까지는 ① 단기 법조경력자(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② 일반 법조경력자(법조경력 5년 이상), ③ 전담법관(법조경력 15년 이상)의 3가지 종류로 구별하여 임용

(***) 2024년도 수치는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기준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라. 검토의견

1) 판사 임용 법조경력요건 완화

-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관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함(법원조직법 제42조제2항). 다만,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여야 함.
- 양 개정안은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이 7년으로 상향되기 전에 현행법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김용민의원안은 이를 10년에서 5년으로, 장동혁의원안은 이를 10년에서 3년으로 낮추고 있음.
- 법조일원화제도는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법관 관료화 문제 등이 지적됨에 따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우수한 법관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법관 고령화로 재판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차질이 우려되는 점, 법조일원화제도의 전제조건인 재판제도의 변화 등이 아직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점 등

을 이유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신임법관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2013년 29.7세에서 2023년 35.4세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법관 지원자의 법조경력 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비중은 대략 10% 정도이고, 임용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남. 최소 법조경력요건이 7년, 최종적으로 10년으로 강화되면, 법관의 고령화와 법관 인력수급의 문제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신임법관 평균연령>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신임법관 평균연령(세)	29.7	30.3	31.6	31.2	31.3	35.1	35.5	34.8	33.9	34.9	35.4

주) 전담법관은 제외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법관 지원자 법조경력 기간별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5년 이상 7년 미만	인원	84명	116명	245명	317명	230명	197명	1,189명
	비율	70.6%	62.4%	64.0%	61.5%	46.8%	45.9%	56.0%
7년 이상 10년 미만	인원	21명	57명	107명	162명	198명	176명	721명
	비율	17.6%	30.6%	27.9%	31.5%	40.2%	41.0%	34.0%
10년 이상	인원	14명	13명	31명	36명	64명	56명	214명
	비율	11.8%	7.0%	8.1%	7.0%	13.0%	13.1%	10.0%
합계		119명	186명	383명	515명	492명	429명	2,124명

주)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 대상(전담법관 미포함)
자료: 법원행정처,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2022, 2023) 발췌·정리

<법관 임용자 법조경력 기간별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5년 이상 7년 미만	인원	28명	59명	128명	136명	96명	89명	536명
	비율	77.8%	73.8%	82.6%	87.2%	71.1%	73.6%	78.5%
7년 이상 10년 미만	인원	3명	16명	22명	17명	33명	28명	119명
	비율	8.3%	20.0%	14.2%	10.9%	24.5%	23.1%	17.4%
10년 이상	인원	5명	5명	5명	3명	6명	4명	28명
	비율	13.9%	6.2%	3.2%	1.9%	4.4%	3.3%	4.1%
합계		36명	80명	155명	156명	135명	121명	683명

주)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 대상(전담법관 미포함)

자료: 법원행정처,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2022, 2023) 발췌·정리

○ 통상 법조일원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들은 1심 재판관을 단독재판으로 운영하고, 사실인정은 배심원이 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관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중점을 두는데, 우리나라는 법관이 증거조사 및 사실인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자 역할을 하며, 전통적으로 판결서 작성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고,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이후에도 재판제도나 법관의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

또한,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법관의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보수나 근무환경(전국순환근무 등)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편이어서, 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7년차, 10년차 이상의 법조경력자가 법관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다만, 법관 임용의 최소 법조경력요건 완화는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법관에 의한 재판으로 인한 사법 불신 등의 극복이라는 법조일원화제도의 도입 취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점,

현재 10년 이상 법조경력자의 법관 지원이 저조한 것은 법원의 법관 임용심사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법원이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갖춘 법관을 임용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 점,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충분한 기간으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 향후 변호사 업무를 위해 단기간 법관으로 재직하거나 대형로펌에서 미리 법관 임용가능성이 있는 변호사를 채용하여 관리하는 전관예우나 후관예우의 문제가 심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조경력요건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지난 제21대국회에서 법관 임용의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본회의(2021. 8. 31.)에서 부결(재석 229인 중 찬성 111인, 반대 72인, 기권 46인)된 사례가 있었던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전담법관 임용제도 법적 근거 마련

- 김용민의원안은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되(안 제42조제2항 본문),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특정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를 임용하기 위한 절차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42조제2항 단서).
- 현재 법관 임용은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과 ‘전담법관 임용’의 2가지 절차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전담법관 임용’은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재직기간 중 민사단독사건, 형사단독사건(형사단독은 2025년부터 신설 예정) 등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법관을 임용하는 절차로, 현행 「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음.

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2(전담법관) ① 재직기간 중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임된 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 개정안은 2013년 법조일원화제도 시행 이후 전담법관 임용 역시 매년 3명 내외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법관 임용의 한 절차로 활용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20년 이상 장기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전담법관 임용제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지닌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의 임용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실시한다’고 규정하여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지닌 사람은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이 아니라 ‘전담법관 임용’을 통해서만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

□ 임용자격

- 2025. 4. 1. 기준으로 20년 이상 아래 직에 재직한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임용구분: 판사

- 민사단독 전담법관
 -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민사단독사건(민사소액사건 포함)만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민사단독사건 중 구체적으로 담당하게 될 재판사무는 임용 지원 시 희망, 보임 법원의 재판부 구성 현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형사단독 전담법관
 -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형사단독사건(정식재판청구사건 포함)만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임용 초기에는 우선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담당하되,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본인의 희망, 보임 법원의 재판부 구성 현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단독사건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 임용 예정인원

- 서울권, 경인권 및 지방권 소재 지방법원 본원 각 0명

□ 임용기준

-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종합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 상당한 경력과 연령의 법조인으로서 풍부한 소송 실무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우선 선발합니다.

자료: 대법원 홈페이지, 새소식 >>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

마. 관계기관 의견

- 법원행정처는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이후에도 그 정착을 위한 여러 전제조건(법관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재판제도와 절차 변화)이 충족되지 않은 점, 법조경력요건 상향으로 역량을 갖춘 충분한 수의 법관 충원이 어려워지고 법관의 고령화로 사건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합의부의 원활한 구성 필요성과 재판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요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조경력요건을 완화**하려는 양 개정안에 찬성하며, 2025년 신규법관 임용절차의 조속한 확정 및 법관 지원자의 충분한 임용준비시간 확보를 위해 즉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인품과 자질이 뛰어난 원숙하고 존경받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전담법관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실현한다는 법조일원화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는 입장임.

2. 재판장 법조경력요건 강화 및 예외규정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김용민의원안은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면서도, 법조경력이 10년 미만인 판사는 재판장(단독재판 및 합의부재판)이 될 수 없도록 하되, 단독재판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에 배치된 판사의 수, 인력수급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10년 미만의 판사도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현행	김용민의원안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①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u>5년 미만인</u> 판사는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① ----- ----- <u>10년 미만인</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 배치된 <u>판사의 수, 인력수급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 소속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재판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조경력이 5년 미만인 판사는 단독재판 또는 합의부재판의 재판장이 될 수 없음. 개정안은 판사 임용의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완화하면서도,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판사는 원칙적으로 단독재판 및 합의부재판의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

법원조직법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5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 사회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판사에 의한 재판으로 인한 사법 불신의 문제가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의 이유 중 하나였음을 고려할 때 재판장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여 보다 풍부한 경험을 지닌 판사가 재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한편, 개정안은 단독재판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에 배치된 판사의 수, 인력수급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10년 미만의 판사도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소규모 지원의 경우에는 판사의 수가 작아 불가피하게 10년 미만의 판사도 단독재판을 맡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과거 단독판사의 연륜을 높이기 위해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만이 단독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예외규정을 두었다가 7년 미만의 단독판사가 많아지면서 동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단독판사의 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면서 예외규정을 삭제하였던 사례가 있었던 점⁷⁾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예외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법원조직법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법률 제8411호, 2007. 5. 1. 일부개정]
제42조의3 (직무권한의 제한) ① 제42조제1항 각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7년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서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건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③ <u>대법원장은 각급법원의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재판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u>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5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서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개정 2007.5.1> ② 제1항의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 ③ <u>삭제 <2007.5.1.></u>

7) 법률 제841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2007. 5. 1. 공포 및 시행) 개정이유 참조

다. 관계기관 의견

- 법원행정처는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은 완화하되,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실현한다는 법조일원화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1
